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)

1.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확대 적용(안 제3조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(음력4월8일), 기독교탄신일(12월25일)까지 확대하여 시행(제3조)
-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(부칙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과 안정적 휴일 보장 및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